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70)

「공인회계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3
2.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7
3.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법정형 하향 조정	10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안 제1조)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1) 「공인회계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IV. 검토의견

□ 정부는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벌²⁾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의 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그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합리화하는 작업을 범 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됨.

1. 「공인회계사법」 개정: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개정안은 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형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② 그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증권선물위원회³⁾에 위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2)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해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있음(「법령 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23, p.564)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현행	개정안
제52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u><신설></u>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① ~ ⑤ (생략)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u><신설></u>	제53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공인회계사로서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현행법 제18조⁴⁾ 및 제40조⁵⁾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해짐.

□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며, 과태료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장부의 미작성·미비치 행위는 사회법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의무태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를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른 법률의 유사 위반행위 관련 벌칙을 살펴보면, 변호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업역별로 유사

4) 「공인회계사법」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인회계사법」 제40조(준용규정) ①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논의 시에 해당 업역의 특성 및 벌칙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과태료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1] 다른 법의 유사 위반행위 관련 처벌 규정

행위주체	규 정	원인행위	위반행위	현행 벌칙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	직무관련 장부작성, 사무소 비치	미작성·미비치	300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	변호사법 제28조	수임 관련 장부 작성·보관	미작성·미보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 제6조제3항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 보존	미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업노무사 및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법 제17조제1항	직무관련 장부 작성, 3년간 보존	작성·관리· 보존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개정안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행정형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⑦ (생략)	제39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4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7조⁶⁾는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유사한 차입제한 규정을 둔 다른 금융기관 관련 법률의 경우 차입한도 초과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표 2] 다른 법의 유사 차입한도 초과 관련 규정

행위주체	규정	차입한도	한도 초과 시 적용 벌칙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	자기자본 범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100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	없음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3항	중앙회,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과 중앙회·농협은행에 예치한 여유자금 합계 범위	없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3항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	없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100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	없음

6)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은 현재 행정형벌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려는 것인데,

- 이는 벌칙 수준과 관련하여 가능한 형평성을 지키되,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위험성이 큰 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이며, 벌칙 적용의 형평성 및 처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법정형 하향 조정

- 개정안은 ①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중앙회장의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을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99조(벌칙) ① (생략)	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___ _____ _____ _____.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삭제>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현행	개정안
	<u>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u> 3.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5. 제93조를 위반한 자

□ 현행법 제86조7)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전부 잠식 등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8)은 중앙회장이 필요한 경우

- 7)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탁금·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탁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8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영 분석·평가 결과 또는 검사 결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합에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구를 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현행법 제86조와 제8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동일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법정형이 유사한 위반행위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표 3] 경영관리 규정 법률의 벌칙 비교

행위주체	규 정	원인행위	위반행위	현행 벌칙
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및 그 임원	수협구조개선법 제4조의2제1항	해수부장관이 임원의 직무를 대리할 관리인 선임 명령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및 그 임원	산림조합개선법 제4조제1항	시·도지사가 임원의 직무를 대리할 관리인 선임 명령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제1항	금융위가 임원의 직무를 대리할 관리인 선임 명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1항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	경영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및 그 임원	농협구조개선법 제4조제1항	농식품부 장관이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 명령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표 4] 자료제출 규정 법률의 벌칙 비교

행위주체	규 정	원인행위	위반행위	현행 벌칙
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중앙회장이 조합에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진술 요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진술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농협구조개선훈법 제21조제8항후단	중앙회가 부실관련자 소송 참가를 위해 조합에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수협구조개선훈법 제18조제8항후단	중앙회가 부실관련자 소송 참가를 위해 조합에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	산림조합개선훈법 제15조제8항	중앙회가 부실관련자 소송 참가를 위해 조합에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제1항	금융위가 법률위반 혐의 있는 저축은행 등에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함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기관	금융산업구조개선훈법 제9조의4제3항후단	금융감독원장이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요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벌칙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처벌을 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경영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수준이 개별 법률마다 상이하므로, 논의 시에 해당 업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격 및 벌칙 수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법정형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